

瑞山市公設墓地等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7. 16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7. 19
- 라. 上程日字 : 1999. 7. 27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社會女性福祉課長 崔鎮珏)

가. 提案理由

- 그동안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공설묘지내 기존 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현행 「시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시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공설묘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묘지사용기간을 삭제함.
- 현행 제11조의 계약해지 조건중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때」의 조문을 삭제함.
-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 완화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산시에서 공설묘지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 동 조례안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묘지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기회를 부여하였고,
 - 묘지의 사용기간을 철폐 및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타시설 사용료와의 형평를 기하였으며,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도 부합되고 입법 예고 기간등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조례안 제5조제1호를 현행 “시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시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규제개혁 완화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입후 30일 미만의 선의의 대상자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답변: 서산시 공원묘지가 타 공원묘지에 비해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에 매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서산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장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제3호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음.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안대로 가결

※ 수정안 「붙임」

瑞山市公設墓地等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 修正案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호에 단서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용자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1. <u>시 관내에</u> 주소를 둔 자	1. <u>시 관내에</u> 주소를 둔 자 <u>로서 사망일 현재 30일</u> <u>이상 실제 거주한 자</u>	1.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u>시장이</u> 특별히 필요 <u>하다고 인정하는 자</u>	3. <u>시장이</u> 특별히 필요 <u>하다고 인정하는 자</u> (단서신설)	3.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11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16.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1999. 7. 16

제 출 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에 나타난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설묘지내 기존 묘지의 배우자와 합장을 하고자 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 나.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규정함 (안 제5조제1호).
- 다.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22조(사용기간)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을 삭제함.
- 라. 기존묘지에 유골을 합장 하는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등의 규정을 신설 (안 별표2).
- 마. 계약해지 조건의 완화 (안 제11조제5호).
- 바.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 완화 (안 제12조).

□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시·군조례 규칙상 규제정비목록 통보 (복지05090-973('99.4.16))

나. 입법예고

- 예고일시 : '99. 3. 25 ~ 4. 15(서산시 공고제 '99-78호)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일 시 : '98. 11. 17
- 심의결과 : 완 화 (기감 05090 -158('99.2.2))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설묘지내 기존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이상 실제 거주한 자.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권 승계신고) 묘지 등 사용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용계약)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p> <p>1. 및 2.(생략) 《신설》</p> <p>② 및 ③ (생략)</p>	<p>제4조(사용계약) ①</p> <p>.....</p> <p>.....</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3. <u>공설묘지내 기존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자.</u></p> <p>② 및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자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u>시·관내에 주소를 둔자</u></p> <p>2. 및 3. (생략)</p>	<p>제5조(사용자격)</p> <p>.....</p> <p>.....</p> <p>1. <u>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자.</u></p> <p>2. 및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기간) ① 묘지등의 기본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계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계약은 묘지는 사용계약기간 만료후 3년 이내에 납골당은 사용기간 만료60일전까지 연장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p> <p>③ 특별한 사유없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9조(사용료등) ① (생략)</p> <p>②제8조제1항에 의거 연장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3할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료등) ①(현행과 같음) (삭제)</p> <p>(삼제)</p>
<p>제11조(계약의 해지) 묘지 등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사용계약을 취소하고 개장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법령, 조례, 규칙,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p>	<p>제11조(계약의 해지).....</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p>
<p>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묘지 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p> <p>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p>	<p>제12조(사용권 승계 신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p>

[별 표 2]

사용료 · 관리비 · 매장작업료

(단위:천원)

구 분		사 용 료				관 리 비				매 장 작 업 료			
		98	99	2000	2001	98	99	2000	2001	98	99	2000	2001
공 설 묘 지	단 장 (1기당)	67	95	123	150	100	141	183	225	162	175	187	200
	합 장	기존	-	-	-	-	70	91	112	-	175	187	200
		동시	-	95	123	150	-	211	274	337	-	262	280
공 설	유연유골	50				30							
납골당	무연유골	50				20							